

해외 한인 장로회 헌법

서문

본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은 1976년 미주한인장로회 총회를 창립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37회, 1954년)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1985년 제10회 총회에서 미주한인장로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을 제정하여 발간하였다.

그 후 몇 차례 부분 개정을 하여 사용하다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헌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를 절감하여 2004년 29회 총회에서 헌법 중 정치와 권징부분의 전면 개정을 결의하고 개정위원으로(위원장:안찬수, 서기:홍성학) 김용호, 김종일, 김창길, 문장선, 박충기, 박희소, 안상호, 안찬수, 홍성학 9인을 구성하고 개정초안위원으로 안찬수, 홍성학 김종일을 선정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제30회 총회는 헌법 전면개정안 초안을 보고 받고 지난 3년 동안 각 노회로 하여금 연구 검토하는 작업과 함께 각 지역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금번 헌법은 본 교단이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 미국장로교회와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개정을 하더라도 같은 정치적인 맥락이 흐르도록 조정하며 동일한 용어사용을 고려하였고 특히 권징부분은 같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앞선 한국 측의 권징제도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이번 헌법은 총회의 영역이 미주를 벗어나 오세아니아와 유럽으로 확장되면서 총회의 이름이 '해외한인장로회'로 개명이 되고 또 다양한 문화와 사회구조 속에서 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해외 70만 한인교회들을 고려하면서 개정한 것이다.

정치편은 총 15장 94개 조문으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개정했고, 권징편은 총 9장 177개 조문을 수정, 폐지, 신설하였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정치편에서 장로의 임기에서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였고 권징부분에서는 기소위원회를 두어 재판과정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재판국원이 판단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재판국원을 연수하여 전문성을 갖게 하는 '연수원'을 두기로 한 점이다.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조문과 보충해야 할 부분은 사용하면서 세칙규정을 만들어 보완하거나 개정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헌법해석' 과 '유권해석모음' 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교회들

이 본 헌법을 좀 더 주님의 뜻에 맞추어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문화와 언어로 하나님을 섬길 권리가 있듯이 헌법 또한 필요에 따라 각국어로 번역하여 주의 몸 된 교회와 교단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우선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어가 불편한 세대들에게 영어헌법을 함께 발간하려한다. 혹 다른 언어의 법해석에 견해차이가 있을 때 한국어 헌법을 중심으로 본 헌법을 바르게 해석할 것을 주문한다.

헌법은 교회가 서로 섬기는데 질서를 지키는 규범이며 특히 권징은 사랑으로 하되 정말 부득이한 상황일 때만 올바르게 사용하여 올바른 신앙과 치리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동안 이 개정작업을 성실히 감당해온 헌법개정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2008년 33회 총회에서 제정하고 18개 노회의 수의를 거쳐 2009년 2월 3일 공포함과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3일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인식

헌법개정위원장: 안찬수

제 2 편 정 치

제 1 장 원 리

해외한인장로회의 정치원리는 다음과 같다.

본 정치 원리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분의 말씀에 근거한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분이 양심의 자유를 주시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정신에 의해서 만들 자유가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믿음의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분의 몸 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진리에 순종하고 신도로 하여금 본분을 다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행사케 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성경의 권위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고와 징계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와 징계를 행한다. 권고와 징계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으로 국법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목사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써 각 치리회의 정당한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교 회

제7조 교회의 정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딤후전 3:15)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 교회

1. 지교회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갈 1:22, 계 1:4, 20),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훈련하며(마 28:20, 행 1:8), 정의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행 2:47).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 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3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제 3 장 교 인

제11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제1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입교인의 자녀로서 5세 미만의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14세 이상 된 자로서 입교 서약을 한 유아세례교인이거나 세례를 받은 자

제13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 봉사과 친교, 구제, 교육과 선교에 힘쓰며, 교회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4조 교인의 권리

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예식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교인의 이명 의무

1. 교인은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 교회를 떠날 때는 6 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알리고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한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별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서에는 책별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 교인의 출타신고 의무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질병 등의 사유로 지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 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 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당회는 철저히 기록 보관해야 한다.)

제18조 교인의 복권

교인이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3개월을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 교인 된 자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제 4 장 교회의 직분자

제19조 교회의 직분자의 구분

교회의 직분자는 향존직과 임시직으로 한다.

제20조 향 존 직

향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행 20:17, 28, 딤후 3:1-13) 그 시무 정년은 70세가 된 해 연말까지로 한다. 단, 향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1조 임 시 직

임시직은 전도사(풀타임, 파트타임)와 서리집사로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 5 장 목 사

제22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며(렘 3:15, 벰전 5:2-4)
2.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벰전 5:1-3),
3.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과 사자이며(벰후 1:1, 고후 5:20, 엠 6:20),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딤후 1:9, 딤후 1: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며(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지키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 고전 4:1-2).

제23조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1.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M.Div)과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2.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4. 입교인으로서 무흠 7년을 경과한 자. 단,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고와 징계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분자는 시무정지 이상의 책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5. 25세 이상된 자.
6. 신앙이 진실한 자.
7.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8.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9.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10.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제24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과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5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조직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시무 허락을 받은 담임 목사이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임시목사이다.
3.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로 연임할 수 있다.
4.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행정, 교육, 음악, 상담, 2세목회 등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임시 목사이다. 단,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1년 이상 지나야 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5. 전도 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상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조직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목사이다.
6. 특수 전도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 기타 특수한 전도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7. 기관 목사는 총회나 노회의 기관과 인정받은 관계기관에서 교육, 구제, 행정, 사업 등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8. 선교 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한 목사이다.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할 수 있다.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9.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정년이 되어 시무를 끝마칠 때 혹은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이다.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의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10. 공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이다.
11. 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 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12. 은퇴목사는 정년 되어 퇴임한 목사이다. 단,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은퇴 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제26조 목사의 청빙

1. 위임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3분의 2를 포함)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담임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관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7조 목사의 청빙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다른 노회 목사 청빙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보낸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할 때 이명증서와 함께 그 서류를 청빙한 노회로 환송한다.
4. 이명증서를 접수한 노회는 즉시 발송한 노회에 이명 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제 5장 제 23조 1, 4-10항에 해당하고 본 총회 신조와 정치고시에 합격한 자.
2. 자매교단은 그 교단의 시행규정과 대등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3. 가입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목사의 임직

목사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임직한다.

제31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지 이전

목사가 임지를 이전코자 하면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목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노회에 시무사임 청원을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 한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한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임시부(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 사임: 지교회가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목사의 시무 사임을 청원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권고 처리한다.
3. 자의 사직: 목사가 지 교회를 시무 중 교회 발전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4. 권고 사직: 목사가 임직 서약을 위약하거나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노회는 사직을 권고 처리한다.

제34조 목사의 휴무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 (1)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2)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3) 신체·정신상의 휴양과 안식을 요할 때
-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 6 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제35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고와 징계를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36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교와 지역사회에서 신임을 받는 진실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37조 장로의 시무연한

장로의 시무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70세)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하며 6년 시무 후, 1년을 휴무하고 자동으로 6년을 더 시무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한 번 더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39조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 전서 3장 8-10절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

제40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41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42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2를 포함)의 득표로 선출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2를 포함)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최고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 4.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43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지 교회에서 임직하며 임직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장로는 선거 후 5개월 또는 그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아야 한다.

제44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시무 사임과 사직

- 1.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무 수행에 어려운 사정으로 시무가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사임할 수 있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혀 교인 반수 또는 그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시무 사임을 권고 할 수 있다.
- 2. 자의 사직과 권고 사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줄 알면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가 결의하여 그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서 처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적법한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사임 여부를 사임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46조 원로 장로

한 교회에서 휴무 포함 15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정년이 될 때 혹은 시무를 사임하여 은퇴를 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길 원하면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47조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은퇴집사 및 은퇴권사는 제직회의 언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8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기한을 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협동 향존직분자

다른 교회에서 이명을 한 향존직분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당회가 결의하여 임무를 맡길 수 있다. 임무를 맡은 협동 향존직분자는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장 전도사, 서리집사

제50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전도사고시를 합격한 후 당회 또는 목사가 시무하는 지 교회를 도와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목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51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입교인으로 무흠 5년 이상 된 자로서, 총회신학교 또는 총회가 인정한 신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단, 시무장로 및 배우자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다.

제52조 서리 집사의 임명

서리 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매년 임명할 수 있다.

제 8 장 치 리 회

제53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54조 치리회의 성질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며 서로 연결된다.

제55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56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와 교회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단, 악행, 분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과 권고와 징계의 일을 처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분자 임명을 할 수 없다.

제 9 장 당 회

제57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당회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증원은 입교인 25명 비례로 1인씩 증선 할 수 있다.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58조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당회장 1인, 당회원 2인인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1인으로 성수된다.)

제59조 당 회 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 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대리 당회장은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노회에 있는 목사 중에서 청할 수 있다.
3. 임시 당회장은 시무 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재판에 계류 중일 때에 노회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노회가 파송하지 않을 때는 그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속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로 청할 수 있다.
4. 미조직 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2항, 4항의 대리 당회장과 미조직 교회의 치리회장은 은퇴 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단 대리당회장과 은퇴목사의 당회장권에는 인사권과 치리권이 없다.
6. 지교회 부목사를 당회장의 사임 후 해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 할 수 없다.
7. 지교회 부목사가 재임 중에 해 교회 당회장으로 청빙될 수 없다. 이를 청빙 하고자 하면 해 교회를 사임 한 후 1년 이상 된 후에 청빙이 가능하다. 단 현 당회장이 은퇴를 준비 하며 후임 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당회가 결의 하고 부 목사도 청빙한 경우는 당회장의 은퇴 후 청빙할 수 있다. 이 때 교회는 해당 목사와 새로운 청빙절차를 거쳐 청빙한다.

제60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하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여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고와 징계한다.
8. 당회는 지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61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의 반수 또는 그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62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

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63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 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 10 장 노 회

제64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5인 이상과 당회 5 처 이상과 입교인 30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노회는 문화적 차이와 세대적 차이가 있을 때 1항과 같은 조건으로 조직할 수 있다.
3.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4. 당회에서 총대 장로의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세례교인(입교인) 50명까지 1 인
 - 2) 51-100명까지 2 인
 - 3) 101-200명까지 3인
 - 4) 201-500명까지 4인
 - 5) 501명부터는 매 600명당 1인씩 증원

제65조 노회원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특수전도목사, 기관목사, 총회파송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선교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고 출석을 확인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66조 노회의 성수

노회의 개회 성수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6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괄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1-8, 딤편 5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고와 징계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지도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편 4:14, 행 13:2-3).
6. 노회는 지 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 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한다.

제6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30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과 장로 각 3인, 총 6인 이상, 3건 이상의 헌의안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 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하되 개회 성수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노회장 또는 직전 증경 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6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 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 명부
2. 부 목사 명부
3. 기관 목사 및 선교 목사 명부
4. 전도 목사 및 특수전도 목사 명부
5. 원로 목사 및 공로 목사 명부
6. 무임 목사 명부

7. 은퇴 목사 명부
8. 전도사, 신학생, 신학 졸업생 및 목사고시 합격자 명부
9. 장로 명부
10. 노회록과 각부서와 각위원회 회의록(명부).
11. 지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연월일을 기록할 것)

제71조 시찰위원회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7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제 11 장 총 회

제73조 총회의 의의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다.

제74조 총회의 조직

총회의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그 수는 총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5조 총회의 성수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 과반의 참석과 총대 목사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범위

총회는 복음이 필요한 세계에서 문화차이가 있는 우리의 세대들을 인정하고, 지역구분과 문화구분을 한 노회들로 구성할 수 있다.

제7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괄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소원, 상고,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미주 한인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나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제78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증경 총회장이 개최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79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 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일 모일에 회집됨을 요한다.”

제 12 장 회 의

제8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3)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 공동의회 개최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5. 공동의회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 3) 직분자 선거
-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 5) 지교회 통폐합에 대한 공동의회 성수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6. 공동의회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7.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81조 제 직 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인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항존직분자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 1) 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 2) 교회 제직 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개최 성수는 1주일 전에 광고하고 회집 출석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시무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승인으로 전도사가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6. 제직회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 2)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현금 취급
 - 4) 기타 중요 사항

제8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3 장 재 산

제8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8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지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이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8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총회나 재단법인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 교회의 부동산은 해외 한인 장로회 해당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제86조 재산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 교회 부동산은 그 지 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 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3. 해외 한인 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 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8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 교회의 재산도 본 교단의 재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14장 선교 동역자

제8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제8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해외한인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9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한인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 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 동역자의 파견 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3. 안수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총회산하 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9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 15 장 헌법개정

제92조 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의 개정

교회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서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반수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임원회로 하여금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할 조항에 한한다.

제93조 교리의 개정

교리(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94조 헌법 개정 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3편 권고와 징계

제1장 총칙

제1조 권고와 징계의 뜻

권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분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고와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고와 징계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고와 징계 절차를 거쳐 책별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4조 책별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별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분자)은 재판을 받아 자기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제5조 책별의 종류와 내용

1. 책별은 다음과 같다.

- (1)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 (2) 근신 :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 (3) 수찬정지 :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 (4) 시무정지 :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 (5) 시무해임 :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 (6) 정직 : 2년 이내의 기간 직분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 (7) 면직 : 직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 (8)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 (1) 견책 (2) 근신 (3) 수찬정지 (4) 출교

3. 직분자(항존 및 임시직분자)에게 과하는 벌

- (1) 견책 (2) 근신 (3) 수찬정지 (4) 시무정지 (5) 시무해임 (6) 정직 (7) 면직

단, 직분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 (1) 상회 총대 파송 정지 (2) 벌금상납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각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출 18:18-22, 레 19:15, 35-36)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 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 (2)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해당 국원을 해당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차상급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해당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지속하므로 하급 재판국원은 판결한 결과로 인해 상급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되지 않는다.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0조 구성

-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 재판국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사건
-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5조 전문위원

-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의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전문위원 또는 재판국원 양성을 위해 연수원을 별도로 두어 매년 연수케 한다.

제3절 노회 재판국

제16조 구성

-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5인 이상 9인 이하(목사 5인, 장로 4인 비율)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 재판국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심판사항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1조 전문위원

- 노회 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당회 재판국

제23조 구성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심판사항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 능력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권고와 징계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 권고와 징계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처리회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로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및 보호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3. 변호업무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소고발을 받지 않는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3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36조 재판 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 (1)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 (2)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 (3) 기소사실의 진술
 - (4)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 (5) 변론의 요지
 - (6)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7)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다.
-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 녹화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 녹화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 녹화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간의 계산

-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 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증인의 의무

-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 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인의 선서

-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3.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4.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 5.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 1.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화해의 중용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중용할 수 있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8조 고소권자

-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0조 고소의 취하

-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1조 고발

-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고발기간

제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은 고발기간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1)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 (2) 죄과 및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 (3) 증거 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 2. 노회 기소위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6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제55조 제3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 기소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 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할 때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 (2) 죄과 명(罪過 名)
 - (3)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 (4) 적용 규정
3. 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할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은 60일 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전항 제2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 신청할 수 없다.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

제67조 기소장부분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분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 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신문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증거 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자유 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국가(연방, 주, 시)가 발행한 증명서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 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고시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죄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한 때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92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96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

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01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1. 항소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항소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제102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 기고기가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03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제106조 준용규정
 1.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 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고

-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 제113조 상고각하의 판결
 -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제114조 상고이유
 -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 제115조 심판범위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제116조 원심판결의 파기
 -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11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11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19조 파기자판
 - 상고 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 제120조 집행과 중국판결
 1. 집행은 확정된 중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 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처리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로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총회 특별재심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 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특별재심위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특별재심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할 수 있다.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특별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 방법

1. 시벌은 소속 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 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 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할 수 있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1.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처리회의 결의로 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처리회와 소속 처리회가 다른 경우 제147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치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47조 해벌 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처리회가 시행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 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취소 등의 소송 : 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처리회 간의 소송 : 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할 수 있다.

제150조 준용규정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항

행정소송은 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 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처리회의 차상급 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구성 :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선임 부장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제 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고와 징계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 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
 -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는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소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 (2) 피고인 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 (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 (4) 행정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
 -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1. 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30일 내에 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처리회를 경유하여 처리회의 차상급 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 소

1. 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처리회 회원은 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처리회를 경유하여 처리회의 차상급 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절 처리회 간의 소송

제165조 처리회 간의 소송

1. 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처리회장은 차상급 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제5절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70조 소송의 처리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1조 증거조사

1. 소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9장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제172조 목사의 규례

1.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립을 하는 행동을 할 때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로 발생되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아니 하였음을 확인한 후 목사를 면직한다.
2. 악의를 가지고 상회나 교단에 폭언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획책하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3. 상습적으로 공금을 개인적인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때 금액 정도와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하되 최고 면직까지 한다.
4. 이성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한다.
5. 목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악행 또는 고의적으로 판결불복을 하거나 거짓말이나 이간하는 언행의 증거가 있다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6.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목사가 해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할 때는 노회가 즉시 목사를 면직한다.
7. 목사의 고소 고발은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되 개인적인 면과 직무적인 면을 구별하여 살핀 후 공정하게 접수처리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목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회개하면 가능한 한 판결을 하지 않거나 가볍게 한다.
9. 목사가 천재, 지변의 이유 없이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판결 전이라도 수찬 정지의 처벌을 한다.

- 타인을 무고하게 고소, 고발하였을 때 무고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시작하여 만 2년간은 교단과 교단산하의 모든 교회와 단체에서 모든 자격과 권리가 정지되고 어떠한 이명도 할 수 없다.

제173조 교인의 규제

- 교회와 사회 법정에 같은 안건으로 같은 기간 안에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교회는 재판을 중지하고 가중처벌로 책벌한다.
- 불법적인 언행으로 당회에 불복하고 예배를 훼방하며, 소문으로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때 순종할 때까지 계속 책벌한다.
- 교회로부터 책벌을 받은 후 계속 불순종하며 회개치 않은 상태로 교회를 떠날 때는 직분을 허락한 그 당회는 직분을 회수하는 결의를 하여 평신도가 되게 한다.
-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교회를 떠날 때는 제3항과 같이 직분을 회수하고 공고한다.
- 교인이 죄를 깨닫고 합당한 회개를 할 때 목사가 시무에 지장이 없으면 재판을 유예하고 2년간 재범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취하한다.
- 재판이 유예되었을 때 교인과 직분자의 모든 회원권을 2년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 소송 안건의 죄과에 대한 증인이 한 사람이며, 다른 증거물이 없을 때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때 고소장 한 장에 다른 죄과에 대하여 고소고발한 증언을 한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증언들이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한다.
- 교인이 재판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자가 소환자체 또는 증언하기를 불응할 때에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 목사의 규제(제172조)를 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174조 판결에 대한 책임과 재판난무 방지

원고나 피고는 판결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누구든지 심사숙고하여 공정한 재판에 순복하는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제175조 수습, 화해(전권)위원회

각 치리회는 재판 전에 화해와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수습과 화해를 위해 약간의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50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 본 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사법권이 침해받을만한 활동을 할 수 없다.
- 재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판결될 때까지 어떤 위원회도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76조 정치와 법의 위치

법과 정치는 상호 연결되어 협력과 견제가 균형있게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잠시 법을 잠재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위법이 된 사항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판단이 우선되며 정치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제177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 총회에서 조직된 헌법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호선하며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

할 수 있으며 거부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총회공천위원회는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해야 하며,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전임 헌법위원장이거나 서기 중에서 선임한다. 1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회 후 보선은 임원회에서 한다.

권고와 징계 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번호	서 식 명
제1호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제7-3호	답변서(권징책별 피고인용)
제2호	변호인 선임서	제7-4호	답변서(행정쟁송용)
제3-1호	소환장(피고인용)	제7-5호	준비서면(권징책별 기소위원회용)
제3-2호	출석요구서(피의자용)	제7-6호	준비서면(행정쟁송용)
제4-1호	고소(고발)장(권징책별용)	제7-7호	기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제4-2호	고소(고발) 취하서(권징책별용)	제7-8호	기소취소서
제5-1호	소장(행정 소송용)	제7-9호	기소취서통지서
제5-2호	소장(결의취소 등 소송용)	제8-1호	판결문(권징책별용)
제5-3호	소장(치리회 간의 소송용)	제8-2호	판결문(행정쟁송용)
제5-4호	소장(선거소송용)	제8-3호	결정문(권징책별용·재심용·특별재심용)
제5-5호	청구변경 신청서(행정쟁송용)	제8-4호	결정문(총회특별심판위원회 행정소송용)
제5-6호	소취하서(행정쟁송용)	제8-5호	판결집행문
제6-1호	불기소처분 결정 및 통지서	제9-1호	항소(상고)장
제6-2호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제9-2호	항소(상고) 취하(포기)서
제6-3호	항고장 (당회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용)	제9-3호	항소(상고) 이유서
제6-4호	재항고장(항고 기각결정 불복용)	제9-4호	답변서(항소·고용)
제6-5호	재항고장 (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용)	제10-1호	위탁재판 청원서
제7-1호	기소장	제10-2호	재심 청구서
제7-2호	기소통지서	제10-3호	총회특별재심청원서

(권고와 징계 제3-1호 서식)

소 환 장
(피고인용)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기 소 위 원 회 : ○ ○ 기 소 위 원 회
고 소 인 (고 발 인) : (이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소 전화 번호
피 고 인 : (이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소 전화 번호

위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하오니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판일시 : 년 월 일 시
2. 재판장소 :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 재판국
재판국장 ○ ○ ○ (서명)
재판국서기 ○ ○ ○ (서명)

○ ○ ○ 귀하

(권고와 징계 제3-2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피의자용)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기 소 위 원 회 : ○ ○ 기 소 위 원 회
고 소 인 (고 발 인) : (이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소 전화 번호
피 고 소 인 (피 고 발 인) : (이름) ○ ○ ○ 나 이 성 별 직 분
주소 전화 번호

위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소인(피고소인)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2. 조사장소 :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 기 소 위 원 회
기 소 위 원 장 ○ ○ ○ (서명)
기 소 위 원 회 서 기 ○ ○ ○ (서명)

○ ○ ○ 귀하

(권고와 징계 제5-1호 서식)

소 장
(행정 소송용)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주소

선정대표자 : (이름) ○○○ 나이 성별
주소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주소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행위의 내용 :

행정행위가 있는 날 : 년 월 일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1.
- 2.
- 3.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분

위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선정대표자)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5-2호 서식)

소 장
(결의취소 등 소송용)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주소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주소

소송의 종류 :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 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의의 내용 :

결의의 날 :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1.
- 2.
- 3.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분

위와 같이 결의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치리회 경유 · (○○○○○ 장)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5-3호 서식)

소 장
(치리회 간의 소송용)

원 고 : ○○ 치리회장 ○○○ 직분
 원고 측 소송위원 : ① (이름) ○○○ 나이 직분
 주소 직분
 ② 전화번호
 ②
 피 고 :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직분
 소송의 대상 : (권한의 유무 또는 권한의 행사) 전화번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1.
- 2.
- 3.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분

위와 같이 치리회 간의 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5-4호 서식)

소 장
(선거 소송용)

원 고 : 후보자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선거인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 노회 선거관리위원장 ○○○ 나이 직분
 주소 전화번호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선거소송의 종류 :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선 거 일 : 년 월 일
 당선인 결정일 :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1.
- 2.
- 3.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분

위와 같이 선거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후보자 ○○○ (서명)
(원고 선거인)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판국장 귀하

(원고와 징계 제5-5호 서식)

청구변경 신청서
(행정 소송용)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 치리회 선거관리위원장 ○○○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청구 취지의 변경내용
청구 원인의 변경내용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원고와 징계 제5-6호 서식)

소취하서
(행정 쟁송용)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 치리회 선거관리위원장 ○○○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6-1호 서식)

불기소처분 결정 및 통지서

사건번호 :

사건명 :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과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불기소처분결정의 주문형태 (□에 √한다)

- 기소유예
- 혐의 없음 - 증거 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
- 죄가 안 됨
- 기소권 없음
- 각하

불기소처분결정일자 : 년 월 일

위의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고 헌법 권고와 징계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고소인(고발인) ○○○ 귀하

피고소인 ○○○ 귀하

(권고와 징계 제6-2호 서식)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사건번호 :

사건명 :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과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불기소처분결정의 주문형태 (□에 √한다)

- 혐의 없음 - 증거 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
- 죄가 안 됨
- 기소권 없음
- 각하

불기소처분결정일자 : 년 월 일

불기소처분 이유

위의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헌법 권고와 징계 제64조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고소인(고발인) ○○○ 귀하

(권고와 징계 제7-2호 서식)

기소통지서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 과 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기사일자 : 년 월 일

첨부 : 기소장 사본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소함을 헌법 권고와 징계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고소인(고발인) ○○○ 귀하

(권고와 징계 제7-3호 서식)

답변서
(권징책별 피고인용)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기 소 위 원 회 :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 과 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답변 취지
답변 내용
(기소사실·고소원인사실에 대한 답변)
증거 방법

- 1. 서증
- 2. 물증
- 3. 인증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답변합니다.

년 월 일

피고인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7-4호 서식)

준비서면
(행정 쟁송용)

사건번호 :
사건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변론준비내용

- 1.
- 2.
- 3.

입증방법

- 1.
- 2.
- 3.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7-7호 서식)

기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사건번호 :
사건명 :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기소장 죄과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기소장 기소사실요지 : 1. 2. 3.

기소장 적용규정 :

기소장 변경내용 :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 추가내용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 철회내용)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 변경내용)

위와 같이 기소장의 기소사실 및 적용규정을 변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기 소 위 원 ○○○ (서명)
기 소 위 원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7-8호 서식)

기소취소서

사 건 번 호 :

사 거 명 :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 과 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기소일자 : 년 월 일

위의 사건에 관한 기소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기 소 위 원 ○○○ (서명)
기 소 위 원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7-9호 서식)

기소취소통지서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 과 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기 소 일 자 : 년 월 일

기소취소일자 : 년 월 일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 취소함을 헌법 권고와 징계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고소인(고발인) ○○○ 귀하

판결문
(권징책별용)

사건번호 :
사건명 :
고소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기소위원회 :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론종결일 : 년 월 일
판결선고일 : 년 월 일

주 문
판결이유

- 1. 죄과될 사실
- 2. 증거의 요지
-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 재판국장 ○○○ (서명)
재판국서기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판결문
(행정쟁송용)

사건번호 :
사건명 :
원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 기소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변론종결일 : 년 월 일
판결선고일 : 년 월 일

주 문
청구취지
판결이유

- 1. 기초 사실
- 2. 증거의 요지
-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 재판국장 ○○○ (서명)
재판국서기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권고와 징계 제8-3호 서식)

결정문

(권징책벌용·재심용·특별재심용)

사건번호 :

사건명 :

고소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기소위원회 :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결정고지일 : 년 월 일

주 문

신청(청구)취지
경정이유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 재판국장 ○○○ (서명)
재판국서기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권고와 징계 제8-4호 서식)

판결문

(총회특별심판위원회 행정소송용)

사건번호 :

사건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경정고지일 : 년 월 일

주 문

청구취지
결정이유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 재판국장 ○○○ (서명)
재판국서기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재판국원 ○○○ (서명)

(권고와 징계 제9-4호 서식)

답변서
(항소·상고용)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항소인(항고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항고소인(피상고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항소(상고)이유서를 받은 날 : 년 월 일

첨부 : 답변서 부분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기소위원장) 또는 원고(피고)·피항소인(피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상고)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 제출합니다.

답변 취지
답변 이유

- 1.
- 2.
- 3.

년 월 일

()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10-1호 서식)

위탁재판 청원서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기소장 죄과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 ○ 항 ○○○○ 행위

원심재판 청원사유 :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1조 제 ○ 항 ○○○○의 경우

-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금액 송금 또는 납부확인증의 사본
- 2. 고소(고발)장 사본

위 사건에 대하여 위의 사유로 위탁재판으 청원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교회 당 회 장 ○○○ (서명)
당회서기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노회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10-2호 서식)

재심 청구서

사 건 명 :

기소위원회 :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원판결재판국명 : ○○ 재판국

원판결 표시 : 1. 주문 2. 판결선고일

원판결 확정일 : 년 월 일

재심청구사유 :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4조 제 ○ 항 ○○○○의 때

재심사유를 안 날 또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날 : 년 월 일

증거서류 :

-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 2. 원판결의 등본
- 3. 기타 증거자료

재심청구의 취지

재심청구의 사유

- 1.
- 2.
- 3.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재심청구인 ○○○ (서명)

(권고와 징계 제10-3호 서식)

총회특별재심청원서

현

사 건 명 :

기소위원회 :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원판결재판국명 : ○○ 재판국

원판결 표시 : 1. 주문 2. 판결선고일

원판결 확정일 : 년 월 일

특별재심청구사유 : (간단히 기재)

증거서류 :

-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 2. 원판결의 등본
- 3. 기타 증거자료

특별재심청구의 취지

특별재심청구의 사유

- 1.
- 2.
- 3.

위와 같이 총회의 특별재심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재심청구인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치리회 경유·(○○○○장)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귀하